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083호 2015. 5. 01.(금)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593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594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0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593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 반영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안 제2조~안 제8조, 안 제13조, 안 제1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 및 지원방법 개정(안 제15조)
(국민기초수급자 ⇒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자)
- 「지방세기본법」의 독촉장 고지기간 변경에 따른 개정(안 제19조)
(7일 ⇒ 50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
(안 2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이의제기 기간 변경에 따른 개정(안제21조)
(지체없이 ⇒ 14일 이내)

□ 규칙명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등으로 별지 1,2,5,6서식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자원순환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560-4392) 또는 Fax(560-276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 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 대비표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593 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과 영 제2조제2항”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과 영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4조”를 “법 제17조”로, “제10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당해기관”을 “해당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제2조제4항에 의한”을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제7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으로, “법 제63조의 규정”을 “법 제68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으로, “각호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내의 수급자

제15조제1항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30ℓ 이내로 공급하여야 하며, 필요 시 봉투구입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중 “법 제6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7일 이내에 10일간”을 “50일 이내에 10일 간”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를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를 “60일 이내에 별

지 제7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를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별표 8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호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5	5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2호	30	70	100
다. 법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호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		500	700	1,000
다) 운반차량의 차체를 도색하지 않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300	500	700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			
마)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않은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300	500	700
바) 폐기물을 누출 또는 흘날리게 하거나 침출수를 유출시킨 경우	300	500	700
사)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300	500	700
아)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않고 운반한 경우	200	300	500
자) 그 밖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2)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300	500	700
(3)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	600	1,000
2)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			
(1) 1일 이상 1개월 미만 초과 시	200	400	600
(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초과 시	400	600	800
(3) 3개월 이상 초과 시	1,000	1,000	1,000
나)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2)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3) (1) 및 (2)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4)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다)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료폐기물 보관용기의 경우 법 제 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를 말한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2)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3) (1) 및 (2)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4)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00	200	300
마)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바) 그 밖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2)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300	500	700
(3)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	600	1,000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500	700	1,000
나) 소각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400	600	800

다)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한 경우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라) 그 밖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4)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수탁받은 폐기물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400	600	800
라. 법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9호	500	700	1,000
마.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	100	200	300
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3호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2)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	30	50
3)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70	100

사.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4호	50	70	100
아.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2	50	70	100
자.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2	300	600	1,000
차.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않고 위탁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카.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3	300	600	1,000
타. 법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파.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하.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3호	100	200	300
거. 법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3	50	70	100
너. 법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6호	300	300	300
더.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	법 제68조	100	200	300

지 않은 경우	제2항제7호			
러.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며.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3호			
1)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수집·운반한 경우		300	500	700
2)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나) 운반비·처분비·재활용비 또는 운반·처분 또는 재활용 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500	700	1,000
다) 운반비 및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한 경우(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분업자 또는 재활용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 외에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0	700	1,000
라) 나)의 내용 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300	500	700
마)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한 내에 사후정산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4)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질·상태 그		500	700	1,000

<p>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말한다)</p> <p>5) 수집·운반능력,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을 위탁받은 경우</p> <p>가) 50퍼센트 미만 초과 시</p> <p>나) 50퍼센트 이상 초과 시</p> <p>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p>				
<p>가) 50퍼센트 미만 초과 시</p> <p>나) 50퍼센트 이상 초과 시</p>		300	500	700
<p>가) 50퍼센트 미만 초과 시</p> <p>나) 50퍼센트 이상 초과 시</p>		500	700	1,000
<p>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p>		300	500	1,000
<p>버.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p>	<p>법 제68조 제3항제5호</p>	100	100	100
<p>서.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않은 경우</p> <p>1)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p> <p>가)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p> <p>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p> <p>다) 바닥재가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p> <p>라)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p> <p>2) 1) 외의 중간처분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p> <p>3)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p> <p>가)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p>	<p>법 제68조 제1항제4호</p>			
<p>가)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p>		200	500	1,000
<p>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p>		200	500	1,000
<p>다) 바닥재가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p>		200	500	600
<p>라)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p>		300	500	1,000
<p>2) 1) 외의 중간처분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p>		300	500	1,000
<p>3)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p>				
<p>가)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p>		700	1,000	1,000

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나)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복토한 경우		400	6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500	700	1,000
4)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5) 4) 외의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6)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300	500	1,000
7)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어.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5호	300	500	1,000
저.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6호	50	70	100
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7호	100	100	100
커.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	법 제68조 제2항제9호			

우				
1)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68조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8조 제3항제8호	50	70	100
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2	100	200	300
허.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법 제68조 제1항제6호	300	600	1,000
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8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3	100	200	300
노.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9호	50	70	100
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0호	50	70	100
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1호	100	100	100
모.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6호의2	1,000	1,000	1,000
보.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0호	300	300	300
소.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8호	1,000	1,000	1,000
오.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2호	100	100	100

조.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3호	100	100	100
초.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1호	100	200	300
1)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2)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은 경우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4)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5)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 능력 확인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	50	100	
코.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0호	500	700	1,000
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4호	100	100	1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사업장폐기물” 이라 함은 <u>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과 영 제2조 제2항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u></p> <p>3. “가정사업계 폐기물” 이라 함은 가정 또는 <u>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에서 고무, 피혁, 섬유, 재활용 가치가 상실된 스티로폼등과 같이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과 이사, 집수리 등으로 사업 활동과 관계없이 배출되며 제 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 폐기물중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u></p> <p>4. ~ 8. (생 략)</p> <p>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u>법</u></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과 영 제2조-----</u> -----.</p> <p>3.----- -----<u>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u> ----- ----- ----- ----- ----- ----- ----- ----- -----.</p> <p>4. ~ 8. (현행과 같음)</p> <p>제3조(적용범위) ① -----<u>법</u></p>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제외 지역은 제외한다.

②이 조례는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③ (생략)

제4조(폐기물처리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이적을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상,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

제14조제1항에 따른-----

-----.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

-----.

②-----법 제17조-----

-----제10조에 따라-----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폐기물처리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

-----.

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

수수료) ① 법 제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당해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9. (생략)

②·③ (생략)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대형폐기물은 폐기물 전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스티커를

수수료) ① 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기관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각 호-----.

1. ~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

1.·2. (현행과 같음)

3.-----

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
기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이
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
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
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
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

②-----

-----14일 이
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서
식에 따라-----

-----.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593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쓰레기 봉투 판매 지정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영업소위치			
판매소구분			
<p>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쓰레기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p>			

(뒷면)

판매자 준수사항

1. 쓰레기봉투판매지정서 및 표지판을 주민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게첩)하여야 한다.
2. 봉투판매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협력하여야 하며 파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주민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3. 진열장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건전한 상행위를 다하여야 한다.
4. 판매인의 명의(승계)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일 10일전 판매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또한, 판매인(대표자)의 사고, 기타 사유로 휴·폐업하고자 할 경우 즉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기타 건전사회풍토 조성에 물의를 빚어 계도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봉투판매소 지정을 취소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594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서 대행업체 선정 및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대행실적 평가 및 사후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신설
 -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대행업체평가에 관한 아래 사항 자문 및 심의
 -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인센티브, 영업구역 축소·조정, 계약해지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업체 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 제12조 (위원회 구성) : 7명 이상 11인 이내
 - 제14조 (회의 운영) : 의결방법 등
 - 제16조 (자료요구 등) : 필요자료 및 의견제출요청
 - 제17조 (수당 등) :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지급

3.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자원순환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392) 또는 Fax(560-276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 자료

-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594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인센티브, 영업구역 축소·조정, 계약해지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업체 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제12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경제환경국장 과 자원순환과장은 당연직이 되고, 기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환경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 3명 이내
2.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
3. 그 밖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지역주민 2명 이내

③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팀장으로 한다.

제16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대행업체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20조 중 “제12조”를 “제1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평가위원회는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인센티브, 영업구역 축소·조정, 계약해지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업체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p>제12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경제환경국장과 자원순환과장은 당연직이 되고, 기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현행	개정안
	<p>1. 청소·환경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 3명 이내</p> <p>2.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p> <p>3. 그 밖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지역 주민 2명 이내</p> <p>③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4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1조(생략)</p> <p>제12조(생략)</p> <p>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① ----- -----제12조----- ----- -----</p> <p>②~③(생략)</p> <p>제14조(생략)</p>	<p>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팀장으로 한다.</p> <p>제16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대행업체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17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8조(현행 제11조와 같음)</p> <p>제19조(현행 제12조와 같음)</p> <p>제20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① ----- -----제19조----- ----- -----</p> <p>②~③(현행과 같음)</p> <p>제21조(현행 제14조와 같음)</p>